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청년 인재의 전문경력관 응시 기회를 넓히고 부처의 우수인재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경력관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하향하고, 인사혁신처장과의 사전협의 없이 일반직공무원 직위를 전문경력관 직위로 변경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처의 인사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 직위 → 전문경력관 직위 변경 자율화(안 제3조제1항)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 직위를 전문경력관 직위로 변경하는 경우, 현행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를 폐지하여 각 부처 장관의 판단에 따라 직위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나. 전문경력관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안 제8조)

전문경력관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 →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되, 교정시설 수용자 및 소년보호기관 학생 등을 대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장 판단에 따라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00.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를 “전문경력관 직위”로 한다.

제8조 중 “20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교정시설 수용자 및 소년 보호기관 학생 등을 대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 경우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전문경력관직위 지정) ①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u>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u> <u>전문경력관직위로</u>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전문경력관직위 지정) ① - ----- ----- ----- ----- ----- -- <u>전문경력관직위</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응시연령) 전문경력관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 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u>20세</u> 이상이어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응시연령) ----- ----- ----- ----- 18세 ----- ---. 단,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u>교정시설 수용자 및 소년 보호</u> <u>기관 학생 등을 대면하는 업무를</u> <u>수행하는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u> <u>경우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으로</u> <u>정할 수 있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연락처	(044) 201 - 8297